

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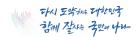
2024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업무처리기준(안)

- 취업연계 장려금 • 현장실습 지원금 -

2024. 4.

"학생과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목 차

│ .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 취업연계 장려금 ······· 3
Ⅲ . 현장실습 지원금 ······ 19
IV. 주요 일정 ···································
붙임자료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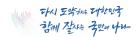
2024년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 사항

□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구 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변경 사유
신청 시기	· 연도별 상이	· 신청 시기 정례화	고객 혼동 방지
지급 방법	· 방법 · 재직기간 완료 전, 취업 시 1회 일시금 지급 · 재직기간 확인 후, 2회 분할 지급 - (1회차) 재직기간 3개월 - 200만원 - (2회차) 재직기간 12개월 - 300만원		재직기간 확인 후 지급 (※국무조정실 권고사항) <mark>정책연구 결과 반영</mark>
의무종사	ㆍ'의무종사'	ㆍ'재직기간 확인'	재직기간 확인 후 지급에 따른 용어 변경
보증보험	· 지급 전, 전원 보증보험 가입 · 폐지		사후 분할지급 변경에 따른 폐지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제출	• 폐지	고객 의견수렴에 의한 편의성 제고 정책연구 결과 반영

□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

구 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변경 사유
신청 시기	· 연도별 상이	· 신청 시기 정례화	고객 혼동 방지





Ⅰ.추진배경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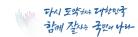
- □ 청년노동시장의 중소기업 구인난과 대졸자 실업률 상승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과잉학력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경감 필요
- □ 고졸 취업자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취업 전, 취업 시, 취업 후의 단계별 체계적 지원 필요

2 추진 근거

- □ (국정과제)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육성(85-6)
- □ (근거법령)「직업교육훈련 촉진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등
- 「교육기본법」(제28조-장학제도 등)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국가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3 주요 추진 경과

- □ 「'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방안」 발표('20.5월, 사회관계장관회의)
 - ※ (주요내용) 현장실습생 지원금,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20.6월~)
- □ '20년 중등직업교육 관련 국고 예산 확대('19년 780억원→'20년 1,347.5억원)
 - ※ (~19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1개 사업 → (~20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앙취업지원
 센터 운영,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4개 사업
-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20.2월)
 - ※ (선정 수행기관) **한국장학재단 (2020~2023년 운영)**
-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23.2월)
 - ※ (선정 수행기관) **한국장학재단 (2023~2026년 운영 예정)**





Ⅱ.취업연계 장려금



1 사업 개요

- □ 사업 기간
 - ㅇ '24년 03월 ~ '25년 05월

□ 지원 규모

- o (사업비 예산) 1,020억 원
- ㅇ (지원 규모) 1인 취업연계 장려금 5백만 원 (2회 분할지급)
-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 재직기간 확인 후 지급



□ 지원 대상

- ㅇ (기본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자
- (학력 요건) 직업계고¹⁾ 3학년 및 일반고²⁾ 3학년 中 직업교육 위탁 과정 6개월(180일) 이상 참여 학생*
 - * 정규학기 미졸업 시 수혜 불가 (기 지급자는 전액 반환 예정)
- (재직 요건) 중소3·중견4 기업에 취업(재직)이 확인된 자로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고용보험 정보로만 심사)

¹⁾ 직업계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동 시행령) 제9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및 동 시행령 제90조제 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교육과정(직업반)

²⁾ 일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직업계고를 제외한 학교

³⁾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상세범위는 [붙임3]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참고)

⁴⁾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붙임1] 참고



2 신청 방법

♦ 사전 준비 →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 약관 동의 → 신청정보 입력 → 사전교육 이수 및 신청 완료

1 사전 준비

- [공통] 본인 계좌개설 및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재단 제휴 은행⁵⁾ 계좌개설 및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
 - (간편 인증서) 재단이 취급하는 전자서명 수단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발급
- ㅇ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교육 증명서(붙임5 참고) 발급
 - 증명서는 붙임 양식(붙임8 참고)을 활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직업 교육 위탁과정 참여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
 - * 원소속 학교명, 위탁교육 기간(일수)이 포함되어야 함
 - ※ 직업교육 위탁과정 180일 이상 이수 완료 증빙 필요

②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 o (서비스 이용자 등록) 전자서명수단을 통해 로그인
 - '서비스 이용자 등록'선택 후 약관동의, 실명확인, 정보입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에서 가능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우측 상단의) "신청하기"

②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신청하기"

⁵⁾ 재단 제휴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 수협, 광주은행, 대구 은행, 부산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③ 약관 동의

○ 주요사항 확인, 장려금 수혜약정서(붙임 7),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 6) 동의

4 신청정보 입력

- [공통] 개인정보, 학교정보, 본인 계좌정보, 법정대리인(부모) 정보 등
- [일반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교육 증명서(붙임 5) 등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학생의 경우 교육 증명서 제출 필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교육 증명서 작성 안내】
 - ① 교육생(학생), 원소속 학교(일반고), 위탁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정보
 - ② 교육 이수 기간 (교육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임을 증명해야 함)
 - ③ 위탁교육기관 기관장 직인

5 사전교육 이수 및 신청 완료

- o 취업연계 장려금 관련 안내 등 **동영상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함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소개, 취업연계 장려금 분할지급 요건 안내, 중소·중견기업의 범위와 이해, 타일자리사업 중복지원금지 안내, 환수 관련 안내 등
- 모든 사전교육 이수 후, **인증서 인증을 통해 장려금 신청 완료**

6 기타 유의 사항

- o 재단에서의 연락은 신청·수혜자 본인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즉시 재단 시스템에 등록 필요
 - ※ 연락 부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수혜자 본인에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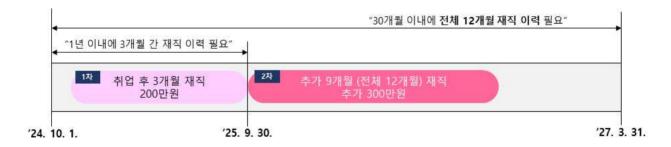




3 심사 기준

□ 재직기간 확인

- o '고용보험' 정보만 활용함 (자격취득일, 상실일, 근로시간 등)
 - ※ 취업보고를 위한 서류 제출 및 심사 폐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1차 지급 시) '25. 9. 30.까지 고용보험 가입정보 및 3개월 간(90일) 재직 이력이 재단에 전달되어야 함
 - (2차 지급 시) 1차 지급자 대상자 중 '27. 3. 31.까지 추가 9개월 (270일)(총 12개월, 360일) 재직기간 확인
 - ※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일 기준으로 심사하며, 자격득실일과 신고일의 시간차가 존재할 경우 재직 확인이 지체될 수 있음
 - ※ 현장실습지원금 수혜자의 실습참여기간 및 군복무대체기간(산업기능요원 등)은 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고용보험 정보로 확인하는 사항 】

- ①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② 고용보험 가입일자(근무 시작일) 확인, 고용보험 상실일자(근무 종료일) 확인
- ③ 근로시간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필수)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6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로 간주

⁶⁾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중략..)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기업 규모(중소・중견기업) 확인

- 취업(재직)기준일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⁷⁾』에 근거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
 - 대상기업 여부는 해당연도 사업기준일 또는 취업일 당시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함
 - 단, 기업 규모(중소·중견) 확인이 불가능하여 재단이 요청할 경우 별도 증빙이 가능한 자료(중소·중견기업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 확인을 위한 심사 기준 정보】

- ① 재단과 협약한 신용정보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의 제공 정보
- ② 기타 신용정보업체의 기업 및 평가 정보 (단, 기업정보가 없거나 이의 제기가 발생되는 경우)
- ③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의 『공공기관 지정 및 공시』정보
-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클린아이)를 통해 확인된 지방 공기업 정보
-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정보)
- ※ 단, 상이한 정보 존재 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청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채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이하 규모로 간주하여 심사
- ※ 단, 신용정보회사의 제공 정보가 심사를 진행하기에 부족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재직기업 형태 변동 시 처리 방안 】

- (동일기업) 1차 지급 시 '중소·중견 기업' → 2차 지급 시 '대기업 등' 규모 변동
 일 경우 2차 지급 가능
- (복수기업) 1차 지급 시 '중소·중견 기업' → 2차 지급 시 이직하여 '대기업' 에서 재직한 경우 2차 지급 불가 → 단, 대기업 퇴사 후, '중소·중견 기업'으로 이직 하여 9개월 간 재직한 경우 2차 지급 가능

⁷⁾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 지급 제한 기업 확인

- o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신청자는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 재직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신뢰하여 심사 및 장려금을 지원하며, 추후 부모기업 재직으로 확인될 시 장려금 전액 반환
- ㅇ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닌 기업 (예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08)에 해당하는 기업

ㅇ 외국법인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음
-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은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음
-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에 해당하는 기업 (단, 구분코드가 84인 경우에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별도 제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단, 신청자가 중소·중견기업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시 재심사 가능

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중 넷째, 다섯째 자리에 해당하는 번호 ex.) 사업자등록번호 xxx-OO-xxxxx



-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3에 해당하는 기업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장려금 지급 대상 기업으로 인정함 (사립학교 제외)

【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중 장려금 지급 대상 법인 】

- ①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단, 사립학교 제외)
 - ※ 예외적으로 농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대한염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함
 - ※ 농업, 어업, 축산업 종사자 및 창업자도 고용보험DB정보가 없으면 불인정 - 단, 필요 시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은 가능
- ㅇ『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 o 『중소기업인력법』제3조9 및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제2조10에 따른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 붙임 3. 중소기업인력법 제3조에 따른 재직 이행 제외 업종 참고

⁹⁾ 중소기업인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¹⁰⁾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제한 확인

- ㅇ 장려금 사업 참여자는 동일 기간 동종의 일자리 사업 참여 불가
- (중복지원 금지 대상)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내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중에서 기관 간 또는 사업별 합의에 따라 중복참여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
 - ※ 기업(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제외
 - ※ 아래 명시된 사업 외에도 취업연계 장려금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의 경우, 추가 검토에 따라 중복참여 금지 대상에 추가될 수 있음

【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대상 】

사업명	부 처	비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은 장려금 수혜 종료 시 가입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의 취업성공수당
장애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취업성공수당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o (중복참여 금지 기간) 장려금 지원 사업기준일로부터 재직 12개월 종료(완료) 후 지급 완료일까지 기간 (단, 1차만 지원받는 수혜자는 3개월 재직 완료 및 1차 수혜 완료 후 자발적 포기 신청 및 재단 승인일까지 기간)
- 1차 및 2차 장려금을 지급한 후(재직기간 12개월 이후), 일모아시스템 취업연계장려금 사업참여 완료자 처리 예정
- 단, 1차 지급(재직기간 3개월 이후) 후에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장려금 2차 지원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로 자발적 포기 신청 후 타사업 참여가능
- (심사 방법) 중복지원 심사 당시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통합** 정보 시스템(www.ilmoa.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



【 사례별 타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또는 희망) 가능 여부 】

- ∘ (장려금 신청자) 타 일자리사업 참여 이력 확인 시 장려금 지급 불가
- · (장려금 수혜자) 1차 수혜자가 2차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재단으로 자발적 포기 신청 후 타 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 (반환 또는 환수대상자) 장려금 반환 또는 환수 완료되기 전까지 타 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우선 선발 기준 확인 (예산 제약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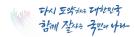
○ 장려금 예산 내에서 요건에 충족한 자에 대해 선발하되 아래와 예산 등 제약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래 순위 요건에 따라 선발 ※ 단, 재단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하여 우선 선발 기준 책정

【 우선 선발 기준 및 순위 요건 】

순위	항목	내용
1	′23학년도 신청자	▶ '23학년도 신청자('24년 졸업) 우선 지급
2	취업 시기	 ▶ 사업기준일 이후 고용보험 전산정보 입사 확인일이 빠른 신청자 우선 지급 ▶ 사업기준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사업기준일을 입사일로 봄
3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우선 지급
4	취약계층	▶ 기초, 차상위 취약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5	전공 연계 취업자	▶ 본인 전공 연계 사업장 취업(재직)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의결
6	직업계고 졸업자	▶ 직업계고 재학 또는 졸업자에게 우선 지급▶ 학생이 입력하고 재단에서 확인한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

- ※ 사업기준일: 매해 회계연도 10월 1일 기준
- ※ 우선순위 책정을 위해, 재단은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 가능 (유효기간 내 서류)
- ※ 위 순위 요건에도 동 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예시) (잔여 사업비 < 지급대상금)인 경우 전년도 신청자('23학년도) 학생을 우선 지급하며, 동일 순위가 다수인 경우, 중소·중견기업 취업(재직) 시기가 빠른 순으로 우선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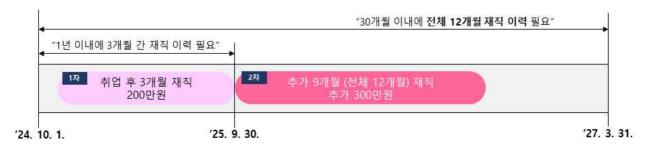




- □ 대학 진학여부 확인
 - 졸업 당해연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불가
 - 단, 고용보험 정보 이력이 있는 자가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 대학, P-TECH 과정, 일학습병행을 위해 폴리텍대학 또는 (전문) 대학 등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가능
 - ◆ 대학 진학자 중 고용보험 정보로 기업 재직이 확인되는 경우 일학습병행으로 간주※ '24학년도 고3학생의 경우, '25년도 內 고등학교 졸업 당해연도의 기업 재직 여부 일괄 심사

4 장려금 지급

- □ 지급 방법 등 (매월 1회 심사 및 지급 원칙)
 - ㅇ 재직 이력을 확인 후 재단에 등록한 본인 계좌로 지급
 - ※ 단, 예산 교부 시기, 당해연도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분할지급) 재직기간에 따라 장려금 500만 원을 2차로 분할지급
 - (1차) '25. 9. 30.까지 3개월 재직 확인 후, 200만 원 지급
 - (2차) 1차 지급자 대상으로 '27. 3. 31.까지 추가 9개월 재직기간 확인 후, 추가 300만 원 지원 (전체 12개월 재직 = 500만 원)
 - ♦ 취업기한: '25. 9. 30.까지 3개월 간 취업 및 재직 이력 필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필요, 고용보험 정보 확인)
 - ◈ 재직인정 기한: (1차) '25. 9. 30.까지, (2차) '27. 3. 31.까지 인정





※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1차, 2차) 후 '취업연계 장려금 증서' 및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 확인서' 발급 가능

5 재직기간 유예 및 재직이행 포기

□ 재직기간 유예

- ㅇ 재직 유예가능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유예신청 가능(붙임 8)
 - (신청기한) '27. 3. 31.이전에 재단으로 신청 필요

【 유형별 유예 사유, 가능 기간 및 증빙서류 】

유예 사유	유예 가능 기간	증빙 서류
군(軍) 입대		▶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 직업군인은 유예 불가
천재지변	최대 24개월	▶ 천재지변 확인 가능 서류(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에서 증빙하는 서류)
임신·출산		▶ 전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관련 병원 진단서 등 증빙 가능 서류
질병·상해 진단서 기간 + 2개월 (최대 24개월 이내)		▶ 전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재단 심사 진행 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가능하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유예 불가)

□ 재직이행 포기

신청자 중 1차 지원기한('25.9.30.) 내 3개월, 2차 지원기한('27.3.31.) 내 추가 9개월 재직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수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6 사후관리

□ 반환 및 환수 사유

- o 장려금 수혜자는 다음의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시 **재단에서는 전액 환수**를 진행함
 - 학교를 정규학기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24년 고3 → '25년 2월 졸업)
 - 졸업 당해연도 대학을 진학한 경우

【 대학진학 예외대학 】

- ◈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P-TECH 과정, 일학습병행을 위해 폴리텍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 부모기업으로 확인된 곳에서만 재직한 경우
- 추후 지급 제한 기업에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및 기타 반환 및 환수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 단, 위의 경우 일부 금액 환수를 진행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 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부정수급이 발견된 경우
 - · 법령¹¹⁾에 근거하여 아래 위반 유형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 가산 금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위반 유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 ❷ 장려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단,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업관리위원회' 를 통해 결정 가능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 반환 및 환수 추진

- 대상자 지정 및 통보 → 이의신청기간 운영(대상자 최종 확정) → 반환 및 환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환수절차 및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통보
- o (대상자 지정 및 통보) 재단 검토 후 환수대상자를 지정 및 통보 하며 대상자 지정일은 사유발생일 해당분기의 마지막 날로 정함
- (이의신청기간 운영) 환수대상자 통지 및 처분을 받은 자 중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 재단에서 환수대상자 지정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함
 - (이의신청내용 검토) 재단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관련 내용을 검토
 -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연장 가능하며, 중대사안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 가능
 - (결과 통보)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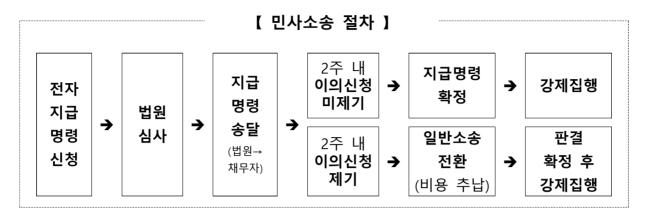
【이의신청 처리 절차】



- (반환 및 환수) 반환 및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재단이 반환 및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재단이 정한 기간 내에 반환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반환금 미납 시 최고장(독촉장) 발송 및 민사소송 추진 가능
 - ◈ 불성실 환수자 지정 후, 보험금 청구 or 민사소송 ('24학년도 이전 참여자)
 - (분할 납부 약정 미체결자) 90일 이상 약정 미체결 시 지정 후 보험금 청구 or 민사소송
 - (분할 납부 약정 체결자) 90일 이상 약정 미이행 시 지정 후 보험금 청구 or 민사소송
 - ※ 단, 기존 약정 체결자 중 환수 약정 만기일이 보험시효 만료일을 초과하는 경우 불성실 환수자 지정 시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



- □ 전자 지급 명령 및 민사소송
 - (불성실환수자 및 최고장 발송자) 전자지급명령 및 민사소송 진행



- (청구금액) 환수 잔액(원금) 및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연 12%
- (지급명령)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직접 전자지급명령 신청
 - · 2회 이상 주소보정명령 또는 송달 후 2주 내 미환수자의 이의 신청 시 민사소송 사건으로 전환
- (민사소송) 재단 계약 소송위임 변호사에 사건 위임

□ 환수금 면제·감면 기준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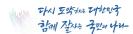
○ (기준) 사망 또는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환수금 면제 또는 감면

【환수금 면제 및 감면 심의가 가능한 사유】

구분	사유
면제	▶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상 장려금 수혜자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일부 감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12)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¹²⁾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 ※ 사망자가 보험 가입자일 경우 심의 절차 없이 보험금 청구하며, 환수금 면제·감면 기준이 부재한 '21학년도 및 '22학년도 수혜자는 위 기준을 소급 적용함
- □ (절차) 재단의 환수 대상자 지정 및 고지 후, 본인이 직접 환수금 감면 신청 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감면 통보
 - 아사망 등으로 인하여 수혜자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할 경우, 수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환수 관련 기타사항 ('24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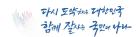
 국고 보조금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20~'22학년도 장려금 수혜자 중 분할약정 체결 시 약정 만기를 보험청구 시효 만기 6개월 이전으로 제한

7 통지 관리

□ 대상자별 통지 관리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대상자 및 환수 대상자 유형별 통지 관리(요약)】

유형	통지대상	통지내용*	통지방법	통지주기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자 및 수혜자	신청자 대상	취업 및 재직 이행 안내	문자 (알림톡), 메일	필요 시
	1차 수혜자 대상	재직 이행 안내	문자 (알림톡), 메일	필요 시
재직 유예자	재직 유예자	유예 기간 내 재직 이행 독려 안내	문자 (알림톡), 메일	필요 시
환수 대상자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자	반환 기한 안내 및 미이행 시 민사소송 예정 안내	OB, 문자 (알림톡), 메일, 내용증명 (독촉장)	환수 사유 발생 시점
환수(반환) 완료자	환수(반환) 금액을 모두 납부한 자	환수(반환) 완료 안내	문자 (알림톡)	환수(반환) 완료 시점





Ⅲ.현장실습 지원금



1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ㅇ '24년 03월 ~ '25년 05월

□ 현장실습 인정기간

- ㅇ '24년 03월 ~ '25년 02월
- ※ 재학 중 기간(졸업일 포함)만 인정하며, 졸업 이후 현장실습은 지원하지 않음

□ 사업예산 및 지원규모

- ㅇ (사업 예산) (국고) 180억 원 + (교육청) 180억 원
- ㅇ (지원 규모) 1일 총 60,000원씩 최대 60일 지원
 - 1일 국고 30,000원 + 교육청 30,000원, 최대 36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및 조건

-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기본 요건) '24학년도 국내 **직업계고**¹³⁾ **3학년** 학생 중 현장실습 지원금을 **신청한 자** (외국인 재학생 신청 가능)
 - ② (지원 요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¹⁴⁾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 실습생

¹³⁾ 직업계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동 시행령) 제9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및 동 시행령 제90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

¹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학생이 해당 기업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는 유형



□ 지원대상 제외 사유

- o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현장실습 등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유형이 아닌 현장실습
 - ※ 단, 도제과정에서 일반취업반으로 전환하여 산업체 채용형으로 현장실습을 이수 하였다면 전환 시점부터 지원 가능
- o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권 등에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중복으로 작성한 경우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go.kr)을 통해 학교에서 올린 서류로만 확인

□ 기타 유의 사항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한 학생은 1일 기준으로 총 60,000원 (국고 30,000원 + 교육청 30,000원)을 지원받으나, **참여 학생이 속한** 지역의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시 국고(30,000원)만 지원 ※ 다만,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60일 이상 이수할 경우, 지원금은 최대
 60일까지(최대 360만 원(국고 180만 원, 교육청 180만 원)만 지원
- 국고, 교육청 예산 소진 시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능하며,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지원 우선순위는 4. 지급 및 사후관리 참고)

[참고. 2023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형]

구 분	유 형	세부 활동 내용	실시 시기
교내 활동	교내 현장실습	·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 지도하는 현장실습	1~3학년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 산업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현장실습 ※ 공동실습소, 견학, 체험활동, 취업캠프 등	1~3=1-1
교외 활동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교육기관, 훈련기관, 실습장, 기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현장실습※ 공동실습소, 폴리텍,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전문대학 등	3학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해당 기업에서 직접 활동하는 현장실습	



2 신청 방법

□ 신청 전 준비사항

- ㅇ 본인 계좌개설 및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재단 제휴 은행¹⁵⁾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개설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
 - **(간편 인증서)** 재단이 취급하는 민간 인증기관¹⁶⁾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 o (서비스 이용자 등록)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통해 로그인
 - '서비스 이용자 등록'선택 후 약관동의, 실명확인, 정보입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가능
-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현장실습 지원금 → (우측 상단의) "신청하기"
- ②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 장학금 → 현장실습 지원금 → "신청하기"

□ 약관 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 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수혜 약정서 약관 동의
- ㅇ 학교정보, 개인정보, 계좌정보 등 입력
- ※ 재단에서의 연락은 **신청·수혜자 본인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즉시 재단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연락 부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수혜자 본인에게 있음)

¹⁵⁾ **재단 제휴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 수협,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¹⁶⁾ **민간 인증기관**: 네이버, 뱅크샐러드, 토스, 카카오톡, 페이코, 삼성패스, 통신사PASS, 신한인증서, 하나인증서, KB인증서



□ 현장실습 정보 확인 및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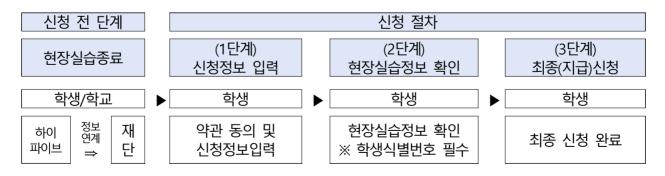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go.kr) 가입 시 입력한 학생 식별번호17) 검색 후 본인의 현장실습 정보 불러오기 및 본인의 현장실습 정보를 최종 확인하여 신청 등록

【 현장실습 정보 확인 방법 】

- ① 신청 단계 중 현장실습 정보 확인 화면에서 신청인 본인의 '학생 식별번호' 입력
- ② 위 학생 식별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go.kr) 내 본인의 현장실습정보 중 이수한 현장실습 정보가 조회됨
- ※ 본인의 현장실습 내역과 조회된 현장실습 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의신청 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go.kr) 및 학교로 확인 필요
- ③ 조회된 정보가 본인의 현장실습 정보인지 확인하여 선택한 후, 본인의 현장실습 세부 정보(실습처, 실습기간, 일수 등)를 최종 확인(여러 건의 현장실습 내역이 있을 경우 모두 선택)
- ※ 실습 정보 오입력허위 확인으로 인한 요건 미충족 발견 시 수혜 자격 박탈 및 지원금 환수

□ 현장실습 수시(추가) 신청

- o 현장실습 지원금을 신청한 후 추가로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
 - 기존에 신청한 현장실습 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추가로 진행한 현장실습 건을 신청할 수 있음
- '(1단계) 신청정보 입력'단계를 생략하고 '(2단계) 현장실습정보 확인'부터 진행하여 추가 현장실습일수에 대한 지원금 신청 ※ 단, 이미 최대 360만원(국고 180만원, 교육청 18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 불가



¹⁷⁾ 학생식별번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five.go.kr)에서 부여하는 번호로, 본 식별번호를 통해 한국 장학재단에서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 시 현장실습 내역 확인이 가능함.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 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학생 LMS화면 등)을 통해 본인의 학생식별번호 반드시 확인 필요



3 심사 기준

□ 수혜 자격 심사

ㅇ 직업계고 재학 여부, 현장실습 유형, 현장실습 이수 여부 확인

자격 요건	주요 내용	심사 방법
직업계고 재학 여부 확인	기본 요건 확인 등	최종 확정된 실습일수 등
현장실습 유형 확인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여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go.kr)
현장실습 이수 여부 확인	현장실습 이수(종료) 여부	데이터 기준으로 심사

[※] 확정된 데이터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go.kr)에서 변경 가능

□ 지원금 산정

- o 학생별 현장실습 일수(최대 3개월, 60일)를 기준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액을 최종 산정
- o 현장실습 일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go.kr) 내 학교에서 최종 확정한 실습일수를 기준으로 산출
- o '24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24.3.1.~'25.2.28.이내 종료된 현장실습 기간만 인정
 - ※ 단, 재학 중 기간(졸업일 포함)만 인정하며 졸업 이후 현장실습 일수는 지원금 미산정, 또한 '24.3.1.이전에 현장실습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24.3.1.이후 현장실습 일수부터 인정
 - ※ 2024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ㅇ 신청 당시 신청인 본인이 확인한 현장실습 일수에 근거하여 지급

【 현장실습 지원금 산정 방법 】

- 현장실습 지원금 계산식
- 국고(보조금) : (1일 기준 30,000원) × (실습 일수)
- 교육청재원(지방비) : (1일 기준 30,000원) × (실습 일수)
- ※ 현장실습 지원금은 최대 360만 원(국고180만 원, 교육청180만 원) 한도까지만 지원



4 지급 및 사후관리

□ 지원금 지급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인 최종 심사통과자 본인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이 (지원 우선순위) 예산 제약 시, 최종 신청이 빠른 순으로 지급
- ※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go.kr)에서 현장실습 종료 내역이 확인이 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 불가

□ 지급 시기

- 이 매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함
- ※ 단, 예산 교부 시기, 당해연도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반환 및 환수 기준

- o 법령¹⁸⁾에 근거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 반환금(또는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단,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졸 취업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관리위원회' 를 통해 결정
 - 보조금 재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기준에 부합할 경우 동 법 및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고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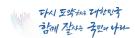
【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단,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업관리위원회' 를 통해 결정 가능

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 교육청 재원의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동 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 진행

□ 반환 및 환수 절차

- (대상자 통지) 반환(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지원금 수혜자를 반환(또는 환수)대상자로 지정 후 통지
 -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환수)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정하여 통지
- ㅇ (반환금 납부) 통지받은 반환금(또는 환수금)을 재단에 납부
 - 통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 내 반환금 납부
 - ※ 단,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보조금법 기준이며, 교육청 재원에 대하여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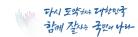
□ 사후 관리

o (미반납자 조치) 반환금(또는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 이행

【 유형별 통지 관리 】

유 형	통지 대상	통지 내용	통지 방법	통지 주기
반환대상자	반환 사유 발생한 자	반환 사유,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등	내용증명 문자 등	반환 사유 확인 일로부터 한달 내
미반환자	기한 내 반환금 미납자	법적조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내용증명 문자 등	매달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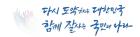
※ 사업 운영 과정에서 통지 방법 및 주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주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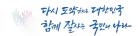


1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일정

구분	내용	주체	일정
사업 공고 ▶ 업무처리기준 공고		재단 (교육부)	'24. 5월~
권역별 설명회	▶ 권역별 설명회 개최	재단	'24. 5월~6월
통합 신청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학생 신청	학생	'24. 5월~6월 본 신청 ('24. 9월~12월)
취업(재직) 기한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학생	~'25. 9. 30.
심사	▶ 매월 고용정보 기반 정기 심사 ▶ 접수된 취업(재직) 상시 심사	재단	'24.10월~ '25.12월
지급	▶심사승인자 대상 장려금 지급	재단	'24.10월~ '25.12월
재직기간 확인	▶ 사업기준일('24.10.1.)로부터 30개월 이내 재직기간 12개월 - (1차) 재직기간 3개월 ('25. 9월까지) - (2차) 재직기간 12개월 ('27. 3월까지)	재단 학생	′27.3월말까지

※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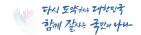




2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 일정

구 분	내 용	주 체	일 정
사업 공고	▶ 업무처리기준 공고	재단 (교육부)	′24. 5월~
권역별 설명회	▶ 권역별 설명회 개최	재단	'24. 5월~6월
현장실습 결과보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내 LMS 일지 입력 및 현장실습일 확정 완료	학생 학교	~'25. 2월
통합 신청	▶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서 제출	학생	'24. 5월~6월 본 신청 ('24.9월~'25.2월)
심 사	▶ (적격심사) 현장실습 여부 등 수혜 적격성 여부 심사 ▶ (지원금 산정) 현장실습 이수내역에 따른 학생별 지원 금액 산정	재단	'24.10월~'25.3월
지 급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수시 지급	재단	'24.11월~'25.5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관련 법조문

□ 교육기본법(시행 2022. 3. 25.)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獎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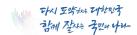
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 2021. 12. 21.)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학금 규정(대통령령)(시행 2019. 7. 2.)

- 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①장학금의 지급 및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1979. 5. 8.,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 2. 공·사립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 위원회가 관장한다.
- ②국고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장학비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③교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의 장학생선발과 장학금지급등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 장학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9. 5. 8.> 2.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실업교육을 받는 자와 기술교육을 받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 **제6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서하여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 제15조 ①장학금의 지급을 받게된 자 또는 받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의 지급사유가 중도에 소멸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그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1973. 8. 8.>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 5. 8.,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로 정하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22. 11. 15)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
-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라. 삭제 <2017. 12. 29.>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2021. 4. 20.>
 -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2. 삭제 <2014. 4. 14.>
 -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 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12.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고용보험법(시행 2023. 1. 1.)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 2022. 2. 18.)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 2.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 6. 산학협동의 실시
- 7. 워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8.)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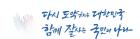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7.)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u>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u>(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4. 1차 금속 제조업	C24	1,500억원 이하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А	
8. 광업	В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ᅖᄀᄜᅕᄱᄃ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평균매출액등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000억원 이하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0억원 이하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 —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Е	
(수도업은 제외한다)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Н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М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	N	ᆑᄀᇜᄎᅅᆘᄃ		
대업은 제외한다)	(N76 제외)	평균매출액등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K	ᆑᄀᇜᄎᅅᆘᄃ		
42.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43. 임대업	N76	400억원 이하		
44. 교육 서비스업	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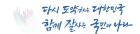
비고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ᆑᄀᇚᇰᅅᄕ
9. 1차 금속 제조업	C24	명균매출액등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20억원 이하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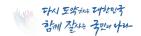




18. 농업,임업 및 어업	А	
19. 광업	В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등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Н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히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500, TIIO)	
	(E36 제외)	_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매출액등
41. 교육 서비스업	Р	10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극권 이어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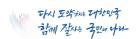


중소기업 제외 대상 기업 상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제외 대상 기업】

구분	주요내용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이 아닌 기업임(예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0 해당 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3에 해당하는 기업 및 재단과 협약한 기업정보제공업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판단하는 기업에 한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기업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지정하는 기관 및 재단과 협약한 기업정보제공업체에서 공공기관 등으로 판단하는 기업에 한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클린아이)를 통해 확인된 지방공기업에 한함
외국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외국 법인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음 ▶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은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음(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 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별도 제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 가능
법인 아닌 종교단체	법인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이 아닌 기업에 해당함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9에 해당하는 기업

-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중 넷째, 다섯째 자리에 해당하는 번호를 의미함
- ※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장려금 지급 대상 기업으로 인정함(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하며 '22학년도부터 비영리법인 중 사립학교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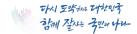


중소기업인력법 제3조에 따른 재직 이행 제외 업종

- o '23학년도부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5자리)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6자리)를 연계하여 심사
 - 적용 범위 및 기준은 국세청 '기준(단순) 경비율'자료를 참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국세청 업종분류 (6자리)	
세분류 및 세세분류	코드	코드 세부 설명	
이바 요즘 조전에	56211	552201	고급주점(독립된 객실)
일반 유흥 주점업	50211	552202	바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552203	클럽, 나이트클럽 등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552204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생맥주 전문점	56213	552205	생맥주집(호프집)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552206	기타 유흥 주점
		552207	단란주점
기디 조저어	56219	552208	기타 서양식 주점
기타 주점업		552209	대폿집, 선술집(토속주점)
		552210	소주방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552211	홀덤펍
		512293	복권(도매)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1	522082	복권(소매)
		924906	복권 발행
무도장 운영업	91291	921904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등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924903	노래방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924917	도박시설 및 경마 등 배팅 시설
기타 오락장 운영업	91241	924904	전화방
가구 내 고용활동	97000	950001	요리사, 가정부, 보모, 운전사, 가정교사 등





직업교육 위탁과정 교육 증명서(재단 표준 양식)

직업교육 위탁과정 교육 증명서19)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교육생 (학생)	소속학교	
	주 소	
	훈련기관명	
교육명세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일수, 시간 표기)	
교육증명 명세	증명대상 기간 (일수 표기)	
	본 기관은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フ	관	명	:
---	---	---	---

주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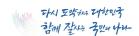
전 화:

기관장:

(기관장인)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귀중

¹⁹⁾ 일반계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직업교육 위탁과정 교육 증명서 제출 필수(직업계고 해당사항 없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장학재단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접수 및 심사, 지급,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개인식별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E-Mail, 소속학교, 학번, 계좌번호, 재직(취업) 증빙서류, 신용보증보험증권번호, 직장명, 직장주소, 고객번호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교육비 면제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관리 및 보조금(공공재정지급금) 환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한부모가족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사업자 등록정보,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접수 및 심사, 지급, 사후관리	<u>10년</u>

- ※ 주민등록번호는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제1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4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 위의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접수 및 심사, 사후관리가 불가하여 장려금 수혜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필수)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취약계층(기초생활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입증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또는	취업연계 장려금 우선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장애아	선발기준 적용 대상	<u>10년</u>
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심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위의 (선택)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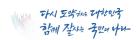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대상 심사 시 취약계층(기초생활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선 선발기준 적용 대상 심사를 할 수 없어 우선 선발기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선택)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한국고용정보원	<u>일자리사업 중복참여</u> <u>여부 심사</u>	이름, 주민등록번 호, 연락처	
SGI서울보증	신용보증보험 가입요청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고객번호	
<u>근로복지공단</u>	<u>재직 이행 여부 심사</u>	이름, 주민등록번호	
<u>대법원</u>	<u>장려금 지급 심사 및</u> <u>사후관리</u>	이름, 주민등록번호	rid
<u>관계행정기관</u> (교육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고용노동부)	<u>장려금 지급 심사 및</u> <u>사후관리</u>	이름, 주민등록번호	5년 (단, 환수 사유 발생 등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 용정보집중기관, 신 용정보회사, 신용조 회회사	<u>장려금 사후관리</u>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접수 및 심사, 사후관리를 할 수 없어 장려금 수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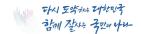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한부모가족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 급여정보 등), 사업자 등록정보,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 원 정보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접수 및 심사, 지급, 사후관리	<u>10년</u>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접수 및 심사, 사후관리를 할 수 없어 장려금 수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재단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 약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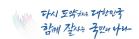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 제1조(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준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하 "장려금") 수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 1.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로서 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정규학기 졸업 등 장려금 수혜자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2. 장려금 수혜자로서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서 재직(현장실습 참여기간 및 산업기능요워 등 군복무대체기간 미포함)**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3. 장려금 수혜자로서 **재직이행 기간**(환수 대상자는 환수 완료 시까지) **중복지원 제한 대상 일자** 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장려금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 4.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으며, 향후 장려금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2조(장려금 반환 및 환수) 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으로부터 통지받은 장려금 및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반환하겠습니다.
 - ① 다음의 위반행위가 있을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인지하였습니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장려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00%
3.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②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으로부터 통지받은 금액을 반환하겠습니다.
- 1. 휴학, 자퇴, 제적, 퇴학 등의 사유로 정규학기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 장려금 전액
- 2. 장려금 수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오선발 포함): 장려금 전액
- 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경우 : 장려금 전액
- 4. 수혜자가 전부 포기(또는 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장려금 전액
- 5. 그 밖에 재단이 장려금 지급, 재직 이행에 대한 제반 업무 수행 중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단이 산출한 금액
- ③ 본인이 제출한 서류 또는 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 정보 등으로 재직 이행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사후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사유로 허위·누락·위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재직 인정 기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④ 재단으로부터 장려금 및 제재부가금의 반환 및 환수를 통보받는 경우 본인은 재단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통보받은 금액을 기한 내(재단으로부터 통지받은 기한) 성실히 반환하겠습니다.
- ⑤ 본인이 제2항, 제3항에 따른 장려금 및 제재부가금의 반환 및 환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관련 법령 및 업무처리기준 등에 따라 민사소송 등으로 장려금 및 제재부가금(법적 조치비용 포함)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혜자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3조(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수혜약정서를 재단이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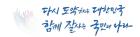
제4조(장려금 관련 법규 준수) 본인은 장려금 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재단 내규 및 기타 법규(장려금 업무처리기준 등)의 규정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제5조(주소 등 알릴 의무) 본인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재단에 알릴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해당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유예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유예신청)

한국장학재단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급자의 중소·중견기업 재직 기간의 유예신청 접수 및 심사,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재직기간 유예가능 입증서류 : - (군입대)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 (임신·출산)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 서류 	재직 기간 유예신청 접수 및 심사, 사후관 리	<u>10년</u>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직 기간 유예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u>질병·상해 또는 임신·출산 진단서</u>	재직기간 유예신청 접수 및 심사, 사 후관리	<u>10년</u>

-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직 기간 유예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사항 (※ 군입대 사유에 한함)

공동이용 행정정보 명	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u>병적증명서</u>	재직 기간 유예신청 접수 및 심사, 사후관리	<u>10년</u>

- ※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처리 담당 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와 같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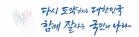
년 월 일

본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기관장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중소기업 확인 서류 견본

발급번호 :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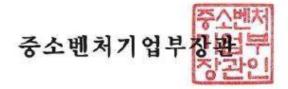
주 업 종 :

유효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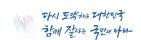
용 도: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 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주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직전 3개년 사업연도내의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며,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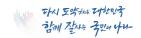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사	업		不人 710		T	법 인 명		
연 	도		5年7月	법 등 기준검 토	H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① B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⑩ 사 업 요 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항 항에 따른 소비성 서 지 않는 사업	_	구분 기 (01) (0 (02) (0 (03) (0 그 밖의 사업 계	5) (사 업 수입금액 07) 08)	(17) 적 합 (Y) 부적합 (N)	(26)
중	⑩ 규 모 요 건		「중소기업기본법 규모기준("평균 2로 봄) 이내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공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억원)	규모기준(11)	(18) 적 합 (Y) 부적합 (N)	적 (Y)
기 업	⑤ 독립성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 ¹ 항제3호에 적합한 기	_	「독점규제 및 공정거리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함편입 · 통지된 것으로 보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연을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한 날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량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에 따른 중소기업기준(⑩의	단등에 속하는 출자제한기업집 는 회사에 해당 인 법인이 주식 경우로서 최다 기 제2조제3호 같은 영 제73 제한법 시행령	회사 또는 같은 법 단등의 소속회사로 당하지 아니할 것 1등의 30퍼센트이상 출자자인 기업이 아 호에 따른 관계기업 도의4에 따라 산정 」 제2조제1항제1호	(19) 적 합 (Y) 부적합 (N)	부 (N)
	⑩ 유 예 기 간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1항제2호, 별표	우 최초 그 사유 와 그 다음 3개 업으로 보고 그 단 시행령」 제3조 1 및 별표 2의 네 해당하지 아니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 사유발생 연도(13)			(20) 적 합 (Y) 부적합 (N)	
	105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		중소기업 업종(⑩)을 주 요건(⑩)을 충족하는지		영위하고, 독립성	(21) (Y), (N)	(27)
소 기 업 	i i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 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별표 3의 규모기준("평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	기본법 시행령」 균매출액등"은 "		억원) 령」별표 3의	규모기준(15)	(22) (Y), (N)	적 (Y) 부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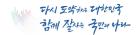




(4쪽 중 제2쪽)

						(47 0	711271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트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⑩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아니고, 종(⑩)을 주된	사업으로 영역	위하는지 여부	(23) (Y), (N)	
			및 공정거래에 자제한기업집단	_			
중 견 기 업	⑩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한 특별법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				(24) (Y), (N)	(28) 적 (Y) 부
	⑩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족할 것 · 이익선 3년 파세연도 배물액의 평균금액					(N)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1 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25) (Y), (N)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 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3천원억 미만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작성 방법

- 1.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을 말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홍음식 점업은 제외합니다) 등
- 2. ② 검토내용란의 ⑩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 3. ② 검토내용란의 ⑩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5)란은 ① 요건란 ⑩의 ①~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⑩의 ①~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5. ④ 적정여부의 (26)란은 ① 요건란의 ⑩ · ⑩ · ⑩ · ⑩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⑩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6. ④ 적정여부의 (27)란은 ① 요건란 ⑯ 및 ⑯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7. ④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6)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⑩, ⑩, ⑩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4. 음료 제조업	C11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4. 1차 금속 제조업	C24	1,500억원 이하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평균매출액등
6. 가구 제조업	C32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0억원 이하
7. 농업, 임업 및 어업	А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 원업	Е	
8. 광업	В		31. 운수업	Н	
9. 식료품 제조업	C10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10. 담배 제조업	C12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М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기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000억권 이야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평균매출액등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00억원 이하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 조업은 제외한다)	C25		39. 금융 및 보험업	К	평균매출액등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	C26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0억원 이하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41. 교육 서비스업	Р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 체다 어조이 브르 미 브르브 <u>ㅎ</u> 느 「토	-4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D

F

G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2. 건설업

23. 도매 및 소매업





(4쪽 중 제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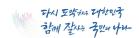
작성 방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7. 농업,임업 및 어업	А	
			18. 광업	В	
2. 음료 제조업	C11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등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조업은 제외한다)	C20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평균매출액등	28. 건설업	F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		120억원 이하	29. 운수업	Н	
조업은 제외한다)	C25		30. 금융 및 보험업	K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C26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50억원 이하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ᇳᄀᆒᅕᅃᄃ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М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00 12 -1-1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15. 가구 제조업	C32		39. 교육 서비스업	Р	평균매출액등
10 저기 기사 조기 미 스트시언	_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원 이하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현장실습 지원금]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은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심사, 지급,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E-Mail, 고객번호, 계좌번호, 학생식별번호, 소속학교, 현장실습처	연상실급 시원급 신성 십누	<u>10년</u>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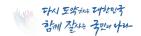
본인 이름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4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할 수 없어 지원금 수령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현장실습 지원금] 수혜 약정서

현장실습 지원금 수혜 약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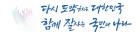
한국장학재단 귀중

- 제1조(현장실습 지원금 수혜자 준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의 현장실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합니다)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혜자"라 합니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 1. 최상의 현장실습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 지원금 수혜자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3. 지원금 신청 자격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하여 지원금 수혜 자격 요건을 갖추겠습니다.
 - 4. 지원금 수혜자로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 및 현장실습 완료 보고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5. 지원금 수혜자로서 본인의 현장실습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며, 본인이 실제 이수한 현장실습 일수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 혜택을 받겠습니다.
 - 6.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으며, 향후 지원금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2조(지원금 반환 및 환수) ① 본인의 다음 각호의 법령에 근거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혜 자격 박탈,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 반환 및 환수할 수 있음과 이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을 알고 있음에 동의합니다.
 - 1. 보조금 재원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고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충 적용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교육청 재원의 경우 공공재정화수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다.
 - ② 지원금 반환 및 환수를 통지받은 경우 본인은 안내된 절차에 따라 통지받은 금액을 기한 내 성실히 반환하겠습니다.
 - ③ 본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 반환 및 환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민사소송 등 강제집행 처분으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제3조(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수혜 약정서를 재단이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제4조(지원금 관련 법규 준수) 본인은 지원금 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재단 내규 및 기타 법규(지원금 업무처리기준 등)의 규정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 제5조(주소 등 알릴 의무) 본인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재단에 알릴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해당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 확히 알고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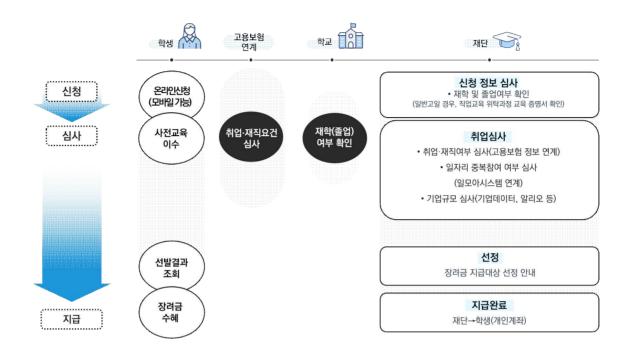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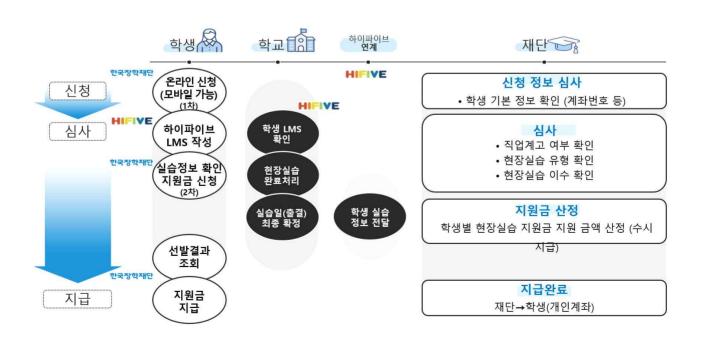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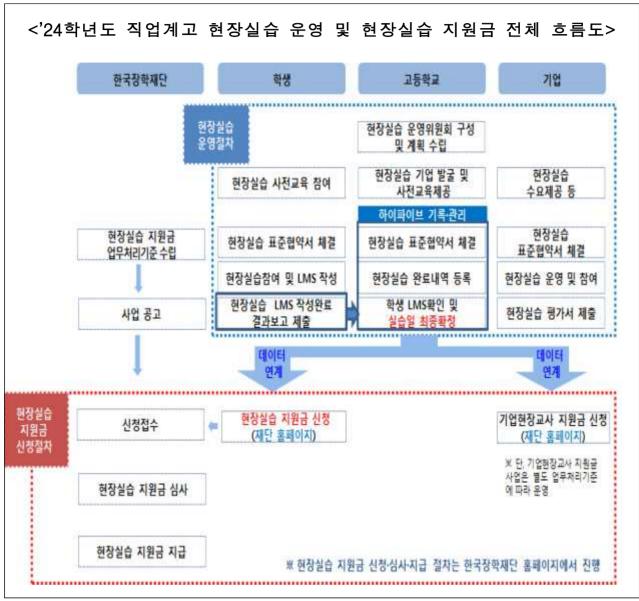
붙임14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 흐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체 흐름도



※ '23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매뉴얼 참고